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4일

발 의 자: 김성준, 강동길, 경기문,
김동욱, 김춘곤, 서상열,
서준오, 유정인, 유정희,
이영실, 이종태, 임종국,
최기찬, 최민규, 최재란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6제1항제7의2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 안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청결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
택시 차량내 담배냄새 및 악취 등으로 승객 승차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차량 실내공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함
- 또한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추가하고, 이를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판 등을 부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(안제5조제4항)
- 나.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추가(안제5조제6항제4호)

다.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문 등을 차내 부착하고,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신설(안제5조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제6항(중전의 제5항)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

- 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<u>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